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7. 22 선고 2023가단527481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

피 고 A

변 론 종 결 2024. 6. 10.

판 결 선 고 2024. 7. 2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58,778,863원 및 그 중 56,583,659원에 대하여 2023. 8. 10.부터 2024. 1. 15.까지는 연 8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20. 5. 18. 피고가 (주)B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5,440만 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(이하 '이 사건 신용보증약정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나. 피고는 2023. 1. 26. 대출이자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, 원고는 2023. 8. 10.

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(주)B에 56,583,659원을 대위변제하였다.

다.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,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채권의 보전 및 행사 등에 소요된 비용 및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고, 그에 따른 대지급금 잔액은 1,932,304원, 위약금은 262,900원이며,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율은 연 8%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1 내지 6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58,778,863원(= 대위변제금 56,583,659원 + 대지급금 잔액 1,932,304원 + 위약금 262,900원) 및 그 중 대위변제금 56,583,65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3. 8. 10.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4. 1. 15.까지는 약정지연이율에 따른 연 8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안현진